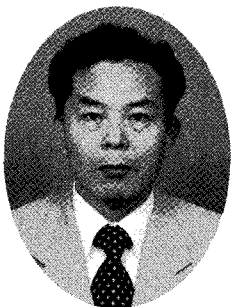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의 억제



김상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서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동법 제1조에서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3장에서는 기업결합의 제한과 함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현상이 대규모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이른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 일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 상호출자를 금하고(제9조),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을 금함(제10조의2)과 아울러 기존의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하며(제10조의3),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제11조)하고 있다. 더욱이 종전 적지 않은 비판에 의해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및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규정들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II. 대규모기업집단

1. 서설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제2조제2호), 이 가운데에서도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공정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시행령 제17조). 종전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즉 자산총액이 4,000억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규제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수가 많아 1993년부터 규제방식을 바꾸었다. 또 1999년 3월 종전 이른바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에 대한 제외규정을 없애면서 이에 관한 항(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다.

다른 한편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해서도 앞서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하고 있다(시행령 제17조제4항).

3. 문제점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 채무보증에 관한 규정의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항상 30개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목적을 경제력집중을 막는다는 데서 찾는 듯 하다. 굳이 경제력집중의 문제로 일련의 기업행위를 규제하려면 경제력집중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여야 하는가의 검토에 앞서 그 지정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데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헌법 제119조제1항),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3조제1항).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 일정행위를 규제한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30위와 이에 속하지 않는 31위를 점하는 기업들의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하나는 위법하고 부당하여 형사벌까지 가하는 대상이 되고, 다른 하나는 적법한 행위여서 시정조치도 받지 않는가에 대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

기업집단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쉬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위를 하거나, 예외기업집단으로 인정되는 영업만을 추구하는 등 예외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예 30위의 범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 방법은 영리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어느 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을 한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 받으면 1년 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31위로 하여야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는 있다. 기업집단이 자산총액순위 31위 또는 이 이하의 순위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1위로 지정받는 것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먼저 기업집단이 자기의 자산총액을 예측하기도

어렵거니와,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집단으로서는 자기가 규제의 대상,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준설정은 불합리하다.

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이른바 금융전업기업집단에 대하여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다(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경제력의 집중이 갖는 문제점으로 소유집중과 영위업종의 다양화를 들고 있다. 과연 금융업이나 보험업에서는 소유집중의 폐해가 발생할 수 없는지 또 이러한 폐해가 현실적으로 금융업이나 보험업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굳이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서라면 이들 업체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에 따르면 상호출자, 채무보증에 관한 규정의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항상 30개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목적을 경제력집중을 막는다는 데서 찾는 듯 하다. 굳이 경제력집중의 문제로 일련의 기업행위를 규제하려면 경제력집중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호출자, 채무보증이 기업집중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 문제는 비단 대규모기업집단에 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집중 억제라는 측면에서라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들만을 규제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더욱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의 문제는 뒤에 밝히는 바와 같이 기업집중과는 거리가 있다.

공정거래법이 상호주 보유를 금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본불충실에 따른 회사채권자 및 주주의 보호에 있다고 이해되지만 회사, 회사의 채권자나 주주의 보호문제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분야라기보다는 회사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Ⅲ. 상호출자

1. 서설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 상호간의 교차적 주식 보유를 금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양 회사가 모자관계가 설정된 경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 취득을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모자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의 상호보유는 허용되며, 단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때에 의결권의 행사만을 제한한다. 즉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비율만큼 상대방회사에 보유 당하고 있는 회사는 그 회사가 가진 상대방회사의 주식이 갖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할 뿐이다(상법 제369조제3항).

증권거래법은 상호주보유형태가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한 정부의 기업공개촉진에 따른 기업공개과정에서 주식의 위장분산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공개의 기본정책에 벗어나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76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이를 제한하였다(제189조 및 209조). 그러나 이번 1999년 개정에서 주식상호보유금지규정을 삭제하였다.

2. 공정거래법의 규정과 문제점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제9조제1항).

공정거래법이 상호주 보유를 금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본불충실에 따른 회사채권자 및 주주의 보호에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회사, 회사의 채권자나 주주의 보호문제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분야라기보다는 회사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다른 하나의 이유로 실질적인 출자 없이 자본금을 늘리거나,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기업공개를 회피하고 특정대주주가 다수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의 이유들 역시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성질은 아니며, 단지 마지막 다수계열회사의 지배수단으로 활용하여 경제력집중 심화의 원인이 된다는 데서 공정거래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왜 상호주보유에 의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오직 대규모기업집단에서만 발생하는가도 의문이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이미 상법에서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법영역이 다른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이를 규제하고 있는 상법에서 그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 독과점의 심화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만 들어 이를 규제하는 점은 너무 안일한 입법자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규제부터 하겠다는 공정거래법 입법자의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속한 문제로 금융기관이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대출채권의 안전성과 보증인의 담보력을 판단하여야 할 문제일 뿐, 국가기관에서 관여할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IV. 채무보증

1. 서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이 상호출자에서와 같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여신이 대기업집단에 편중되는 현상을 가져오며, 부실기업의 도태를 방해한다는 폐해 등을 들어 이를 금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1992년 채무보증규정을 도입하였으며, 도입 당시에는 자기자본의 200%로, 1996년 개정에서 1998년 3월말까지 100%로 낮추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8년 개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계열 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을 1998년 4월부터 완전금지하고, 기존채무보증에 대하여는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하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새로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2001년 3월말까지, 이후에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해소하도록 하였다(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부칙 제1조).

2. 문제점

금융기관이 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건 법인에 대해서건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자는 보증인을 세우고 자금을 융자받는다. 금융기관의 보증요구를 받는 개인의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친인척이나 친지이다. 이들의 경우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못지 않게 당사자간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보증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의 경우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요구받는 경우 채무보증을 하여 줄 자로 먼저 계열기업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채무보증을 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금융기관에게 부실채권을 안겨 준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된 데에 이 점은 무시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속한 문제로 금융기관이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대출채권의 안전성과 보증인의 담보력을 판단하여야 할 문제일 뿐, 국가기관에서 관여할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보증인이 있는데도 이보다 못한 기업이나 개인을 보증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으므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부실채권문제는 항시 존재한다. 이른바 IMF 사태 이후 개인의 연대보증제도를 수정하거나 없애자는 의견이 있으며,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에 찬성하는 것 같다. 그것은 앞서 개인의 보증이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을 법이 금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문제이고, 그것은 보증인을 세우는 것인데, 이들이 현실적으로 대표자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기업경영상의 의존도 못지 않게 보증 그 자체를 위한 이른바 "맞보증"을 서고 있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다른 또 하나의 이유로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계열기업의 퇴출을 막아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소수계열회사의 부실경영이 그룹 전체에 파급되어 대규모 연쇄도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꼽는다.

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개인이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 역시 금융기관에게는 불량채권을 안겨 줄 수 있음에도 법은 침묵하고 있음은 무엇 때문인가. 물론 법의 이러한 규제는 기왕의 금융기관이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러한 책임을 바로 그들에게 묻기 위하여는 과연 우리의 금융기관들이 그 동안 얼마나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만약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친 주체가 있다면 바로 그들을 규제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지 나타난 현실이 문제라고 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다른 또 하나의 이유로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계열기업의 퇴출을 막아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소수계열회사의 부실경영이 그룹 전체에 파급되어 대규모 연쇄도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꼽는다. 보증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의 이해당사자는 당해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이다.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영리행위의 주체로서 상인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점이 채무보증에 따른 부담과 이에 상응하는 대가관계 여부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가관계가 최소한 회사에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상인으로서의 합리적인 자세이다. 경영진들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보증의 경우만이 주주들의 책임추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사나 사실상의

이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이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회사가 이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비합리적인 채무보증에 대한 회사 내의 감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회사법의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우선적이다. 다른 한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회사가 무자력상태에 빠진 경우 회사채권자의 보호문제 역시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회사의 채무보증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채권자들은 회사의 이사나 사실상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을 금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보증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과의 맞보증을 택하게 될 것이다. 앞서 기업집단간의 채무보증으로 인해 기업집단의 연쇄도산을 가져 올 수 있다면, 다른 기업집단과의 맞보증은 두 개 이상의 기업집단의 연쇄도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크다. 그렇다고 다른 기업과의 맞보증까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채무보증은 적법한 거래이며, 경제거래이다. 이러한 경제성의 문제는 개인에게서보다 기업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의 규제는 적법한 경제거래에 대한 제한이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업에 대하여서만 채무보증을 금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더욱이 유독 일정한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데는 이에 합당한 합리적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공정거래법은 다른 한편 예탁자의 보호 차원에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다고 한다. 그러나 예탁자의 보호는 금융·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다루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비록 계열회사일지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경제적 이유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업의 경우에도 개인에서와 같이 현실적으로 비경제적, 비합리적인 채무보증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다른 범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도외시하고 공정거래법에서 다루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V.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 서설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11조). 다른 한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계열회사간의 주식상호출자금지규정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본 조는 상호출자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법이 유달리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은행, 보험회사, 단기금융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또는 상호신용금고 등의 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금융·보험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실익을 없애기 위하여서이다.

2. 문제점

공정거래법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이유를 이들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실익을 박탈하려는 데서 찾는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만 본다면 금융·보험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차이가 없음에도 유독 이들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한편 예탁자의 보호 차원에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다고 한다. 그러나 예탁자의 보호는 금융·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다루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비록 계열회사일지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정 방법은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하여 이사에게 적용되는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및 이러한 책임추궁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소송(제403조)의 규정들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보험회사의 임원진의 적절하지 못한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는 회사, 주주 및 제3자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이 규정으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경영이 보장된다고 본다.

의결권행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 법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6조제1항제7호). 의

기업의 업종전문화나 업종다양화는 법적 규제의 대상 밖에 있다.
 설령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을 빠져 나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결권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문제로 주총결의취소의 소나 부존재의 소의 사유가 되므로, 의결권행사가 제한된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징역형까지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무리라고 본다.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은 비단 금융·보험업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예탁자의 보호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I. 출자총액제한규정의 부활

1. 서설

'98년 개정전 공정거래법은 제10조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아 이 규정을 삭제하였다.

2. 재도입의 타당성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이유를 기업의 계열화나 기업집단의 형성 및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데서 찾는다. 그러나 그 결과 기업의 신규사업부문의 투자가 위축된다. 물론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는 입장에서는 선단식 기업경영을 방지한다고 이해한다. 기업의 업종전문화나 업종다양화는 법적 규제의 대상 밖에 있다. 설령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을 빠져 나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출자총액을 삭제 전과 같이 25%로 하는 움직임이지만, 종전 40%에서 25%로 낮추었을 때의 비판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평균출자액이 순자산의 26.8%에 불과하여 40%의 기준이 의미가 없어 개정하였다. 이른바 IMF 사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출자총액의 비율이 25% 이하인 경우 다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인지 의문이다. 종전 개정에서 보듯이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하여 출자총액을 제한하는지 규제대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을 제한하는지 명쾌하지 않다. **공정**

토막상식

출자총액제한제도 한 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재벌그룹들이 기존 회사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해 기존 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면서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과거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0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만 적용하다가 지난해에 폐지된 바 있다.